

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2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7. 9. .

제 출 자 : 경상북도지사

1. 개정이유

- 상위근거 법령인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고 있는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특수하고 열악한 현장(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) 근무 직원의 적정한 장려수당 지급을 위함

2. 주요내용

- 장려수당 지급대상 신설 및 지급액 규정(안 제5조)
 - 대 상 :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
 - 지 급 액 : 월270,000원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 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 : 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7. 8. 3 ~ 8. 23(20일간)
- 나. 입법예고방법 : 도보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
- 다. 의견제출 결과 : 의견없음

7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 § 예산담당관-8247(2017.7.28.)
 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
- 나.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§ 감사관-10343(2017.7.31.)
- 다.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 § 여성정책관실-18732(2017.7.27.)
- 라. 규제심사 :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§ 혁신법무담당관-7938(2017.7.31.)

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별표 9””를 “별표 9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별표 1””을 “별표 1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별표 2””를 “별표 2”로 한다.
제3조 중 ““별표 9””를 “별표 9”로, ““별표 3””을 “별표 3”으로 한다.
제4조 중 ““별표 14””를 “별표 14”로, ““별표 4””를 “별표 4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

장려수당 지급 구분표(제5조 관련)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월270,000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영 “ <u>별표 9</u> ”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및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 1. 일반직의사 : “ <u>별표 1</u> ”의 지급 구분표 2. 일반임기제의사 : “ <u>별표 2</u> ”의 지급 구분표	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-- <u>별표 9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별표 1</u> ----- ----- 2. ----- <u>별표 2</u> ----- -----
제3조(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) 영 “ <u>별표 9</u> ”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“ <u>별표 3</u> ”에 따라 지급한다.	제3조(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) -- <u>별표 9</u> ----- ----- ----- <u>별표 3</u> ----- -----.
제4조(직급보조비의 가산금) 영 “ <u>별표 14</u> ”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(소재지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“ <u>별표 4</u> ”에 따라 지급한다.	제4조(직급보조비의 가산금) -- <u>별표 14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4</u>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 제8호</u> <u>아목의 규정에 따라 「축산물 위생</u> <u>관리법」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임</u> <u>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</u> <u>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</u> <u>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</u> <u>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</u> <u>5에 따라 지급한다.</u>

관 련 법 령 발 취

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제14조(특수업무수당)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.

[별표 9]

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14조관련)

구분	수당명	지급대상	지급액 및 지급방법
특수 행정 분야	8. 장려 수당	라. 위생처리장·하수처리장·쓰레기처리장 등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. 화장장·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 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. 공원묘지·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 시설의 관리·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.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<u>아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</u>	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
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증가되는 수당은 2,304만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
- 지급대상 및 연간 실 지급액 산출
 - 도축장 검사관 : 16명 (2017년 7월 현재)

==> 예상비용 : 5,184만원 - 2,880만원 = 2,304만원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장 려 수 당 : 16명 × 월27만원 × 12개월 = 5,184만원 (증)- 의료업무수당 : 16명 × 월15만원 × 12개월 = 2,880만원 (감) <p>[※ 장려수당, 의료업무수당 병급 불가!]</p> |
|---|

3. 작성자

-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시설서기 서준민(☎054-880-2847)

